

意見書 2

일 자 : 2001. 1. 29.

수 신 : 교육부장관

제 목 :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(안)에 관한 의견서 제출

國立學校設置令改正令(案)에 關한 意見書

1. 사 유

가. 국립학교 도서관의 직제는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음.

나. 입법예고(2001.19)된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(안)의 제9조(대학의 하부구조) 제④항의 단서조항의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“교육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함.

2. 주요골자

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(안) 제9조(대학의 하부구조) 제④항의 본항 내용에는 사서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인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로 되어있어 사서서기관이 빠져있음.

사서서기관은 문헌정보학 관련 자격증을 소지자로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(안) 제9조(대학의 하부구조) 제④항의 단서조항에 사서서기관을 삽입하여 “다만,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사서서기관·사서사무관·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”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함.

3. 대비표

| 국립학교설치령(현행) |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(안) | 국립학교설치령수정(안) |
|---|--|---|
| <p>제13조(도서관) ①도서관(금오공과대학교·여수수산대학교·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)에 수서과·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,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, <u>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</u>(강릉대학교·공주대학교·군산대학교·목포대학교·부경대학교·순천대학교·안동대학교·제주대학교·창원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정리과장은 사서사무관)으로,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| <p>제9조(대학의 하부구조)④과장 또는 담당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·사서서기관·공업서기관·시설서기관·교육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계사무관·전기사무관·토목사무관·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 다만,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| <p>제9조(대학의 하부구조) 좌동 다만,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<u>사서서기관·사서사무관·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으로 보한다.</p> |